

K-Food산업연구소 규정

(제정 2009. 1. 1)

(전부개정 및 제명변경 2020. 4. 14.)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명칭) 본 연구소는 전주대학교(이하 “본교” 라 한다) 부설 K-Food산업연구소라 한다.

제2조(목적) 이 규정은 조리·식품·외식·문화콘텐츠 등 자연과학과 인문사회 융합분야의 학술 연구활동지원과 연구역량강화, 전문인력양성을 통하여 국내외 K-Food산업의 활성화 및 연구기반 확대·발전을 위하여 설치한 K-Food산업연구소(이하 “연구소” 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구분) 연구소는 「부설연구소 설치 등에 관한 규정」 제2조제3항에 따라 특화연구소로 구분한다.

제4조(위치) 연구소는 본교 내에 둔다.

제5조(사업) 연구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K-Food 산업 실용화를 위한 K-Food 관련 조리·식품·외식·문화산업 기업 지원 등 산학협력
2. 외부 연구과제 및 용역의 수탁과제 수행
3. 식품 가공 기술융합연구 및 양산화 관련 사업 수행
4. 교육프로그램 위탁 및 연계 진행
5. 연구발표회, 학술세미나 및 강연회 개최
6. 공동 워크숍 및 초청 강연, 교육
7. 국내·외 연구소 및 기업과의 학술교류
8. 그 밖의 연구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

제 2 장 조직 및 기구

제6조(조직) 연구소의 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연구소장: 1명
2. 간 사: 1명
3. 감 사: 2명 이내
4. 연 구 원: 약간명
5. 연구인력: 약간명
6. 연구소 지원인력: 약간명
7. 운영위원: 7명 이내

제7조(연구소장) ① 연구소장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
② 연구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며 연구소의 운영을 총괄한다.

③ 연구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
제8조(연구원) ① 연구원은 본교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연구원으로 가입하기를 원하는 교원은 「부설연구소 설치 등에 관한 규정」의 [별지 1]의 가입신청서를 연구소에 제출하여야 하며, 연구소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입을 승인한다.

③ 연구원은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연구 및 사업을 수행한다.

제9조(간사) ① 간사는 연구원 중에서 연구소장이 임명한다.

② 간사는 연구소의 사무와 운영위원회의 회의록 작성을 담당한다.

③ 간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제10조(감사) ① 연구소는 자체적으로 감사활동을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연구소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.

② 감사는 매 회계연도 종료 직후 1개월 내에 연구소 사업 및 회계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.

③ 감사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소장이 임명한다.

④ 감사결과는 문건으로 작성하여 연구소 간행물 등에 공표하고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1조(연구인력) ① 연구인력은 연구원과 협력하여 연구소의 연구활동 및 용역사업에 기여하는 사람을 말한다.

② 연구인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연구교수
2. 박사후연구원
3. 특별연구원
4. 연구조원
5. 연구보조원

③ 연구교수의 (재)임용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임용한다.

제12조(연구소 지원인력) 연구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직원 및 조교 등의 연구소 지원인력을 둘 수 있으며 총장이 임명한다.

제13조(연구부서) ① 연구소에 다음과 같이 센터를 둘 수 있으며, 각 센터에는 센터장을 둘 수 있다.

1. K-Food R&D 연구센터
2. K-Food Hospitality 연구센터
3. K-Food E-edu 연구센터

② 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의 연구원 중에서 연구소장이 위촉한다.

- ③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.
- ④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제 3 장 운영위원회

제14조(설치 및 구성) ①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- ② 위원장은 연구소장이 된다.
- ③ 위원은 소속 연구원 중에서 연구소장이 위촉하며, 센터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.
-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제15조(심의사항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- 1. 연구소의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
- 2. 연구인력 임용에 관한 사항
- 3. 연구교수 평가 및 임용에 관한 사항
- 4. 연구소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- 5. 센터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
- 6. 연구소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
- 7. 감사 선출에 관한 사항
- 8. 그 밖에 연구소 운영에 관한 사항

제16조(회의)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, 위원 3분의 1이상 또는 소속 연구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
-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,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③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, 참석위원 2인 이상의 서명·날인을 받아 보관한다.

제 4 장 재 정

제17조(재정) 연구소의 재정은 연구간접비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연구소 사업 등에 의한 수입금 및 기타 보조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.

제18조(예산 및 결산) ① 연구소 예산 및 결산은 본교의 회계연도에 따르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- ② 예산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소장이 집행하고, 감사의 감사를 받는다.

제 5 장 보 칙

제19조(준용)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「부설연구소 설치 등에 관한 규정」을

따른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9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0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.